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인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영세축산농가의 개인정화시설 설치부담을 해소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인근하천 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03-2번지 일원에 1일처리 용량 200㎥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000. 11. 7일 준공을 목표로 시운전중에 있음.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축산폐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신규로 확충한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권고하는 한편 현재 표준정원의 초과로 인해 인력증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운영요원을 확보할 수 없어,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일정기간동안 위탁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의 범위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 나.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94·12·20>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내용타당성

- 환경부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를 다음 표와 같이 비교하였음.

(단위:천원)

구 분		직영관리	위탁관리	비 고 (증 감)
처리용량		200kl/일	200kl/일	
운영인력		16인	10인	△6인
유 지 관 리 비	총 계	802,000	685,480	△116,520
	인 건 비 (기술직 및 일용인부임)	384,000	205,370	△178,630
	직접경비	330,000	273,150	△56,850
	(약 품 비)	90,000	81,150	△8,850
	(동 력 비)	120,000	120,000	0
	(수선유지비)	120,000	72,000	△48,000
	일반관리비	88,000	88,000	0
	이 윤	0	56,650	56,650
	부가가치세	0	62,310	62,310

- 위의 표와 같이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므로 본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위탁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함으로 위탁업자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아울러, 민간위탁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환경부의 직영/민간위탁 유지관리비 비교분석자료 표와 같이 민간위탁시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중(p.11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15,000천원)의 계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됨.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조 현 목	답변부서	환경보호과	질의일시	2000.10.17
제 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질의요지] ○ 설계오류 하자에 대한 조치사항 ○ 철근 총소요량 및 누락분 ○ 설계변경 횟수 및 사유					
[답변내용] ○ 설계오류 하자에 대한 조치사항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주)에 철근수량설계 오류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등의 부 실벌점관리) 제1항의 법 적용 검토를 하였으나 제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재설계 납품토록 조치 ※ 제재대상 :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 (본 실시설계 용역비 : 128,500 천원) ○ 철근 총소요량 및 누락분량 - 총소요량 : 485.5 톤 - 누락분량 : 172.8 톤 ※ 설계도면 : 485.5톤, 내역서 : 312.7톤 ○ 설계변경 횟수 및 사유 : 불 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리시설 설계변경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공 사 금 액		증 감 액	공 사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 총 계	7,475,830 천원	9,221,000 천원	1,745,170 천원		
-토목,건축,기계,배관	4,670,421 천원	5,496,600 천원	826,179 천원	'97. 12 ~ 2000. 11.	
-전기	890,488 천원	931,007 천원	40,519 천원	'97. 12 ~ 2000. 11.	
-전면책임감리용역	361,000 천원	441,000 천원	80,000 천원	'97. 8 ~ '99. 12.	
-기본및실시설계	176,000 천원	176,000 천원	0 천원	'96. 6 ~ '97. 7.	
-관급자제대	1,377,921 천원	2,176,393 천원	798,472 천원	'97. 12 ~ 2000. 1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변경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계 약 일 (공사기간)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과주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공사 (총괄) (토목, 건축, 기계, 배관)	계약금액 :4,670,421,000원 총공사부기금액 :4,321,500,700원	(1차변경) 5,006,540,000원 (중)685,039,300원	'98.10. ('97.12. ~ '99.7)	1.부지조성시 사토운반(24,562m³)비 증액 2.처리시설 철근량 누락분(172.8톤) 증액 3.부대공 세륜시설(1개소) 설치비 증액 4.E/S 증액	
		(2차변경) 4,488,052,010원 (감)518,487,990원	'99. 7. ('99. 7 ~2000.4)	1.진입도로공 감액(배수관로 포함) 2.방류수 배관중 일부분 감액 3.'98 수해복구비 실비 계상 4.조경공사중 통일로에서 발생된 은행나무 식재에 따른 감액 5.탈취탑, U/F 예산부족으로 감액 후 차기공사로 이월	
		(3차변경) 5,496,600,000원 (중)1,010,547,990원	2000. 4. (2000.4 ~200.11)	1.정문설치계획을 기존 분뇨처리장 정문 공동사용으로 감액 2.텐스설치 176경간중 35경간 감액 3.한외여과막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가 4.액상부식조 소포설비 추가 5.전처리시 데칸타설비 증가 6.관리동 정화조, 시상수배관, 호이스트 증가 7.종합시운전 포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변경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계 약 일 (공사기간)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파주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공사 (총괄) (전 기)	계약금액 :890,488,200원	(1차변경) 919,468,000원 (증) 28,979,800원	'98.10. ('97.12. ~2000.4)	1.이송펌프, 탈수기, 협잡물제거장치 용량증가 2.각종 이송 및 주입펌프 전선관 용량증가 3.브로와실, 장비반입실 호이스트설비비 감액 4.옥외보안등, 옥외간선 일부 감액	
		(2차변경) 931,007,000원 (증) 11,539,000원	2000. 4. (2000. 4 ~2000.11)	1.송풍기 5.5kw 3대에서 3.75kw 2대로 변경 2.약품포기용펌프(0.75kw) 1대 추가 3.액상축매이송펌프(5.5kw) 1대 추가	
			시설 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변경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계 약 일 (용역기간)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화주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361,000,000원	(1차변경) 441,000,000원 (증) 80,000,000원	'99.8. ('97.8. ~ '99.12)	당초 시공사인 상우종합건설의 부도 및 '98년 수해복구와 지방양여금 예산 미반영에 따라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공사 지원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 기간 증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변경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계 약 일 (용역기간)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화주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 : 47,500,000원 실시설계 : 128,500,000	-	'96.3. ('96.3. ~ '96.9) '97.5. ('97.5. ~ '97.7)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변경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재 약 일 (공사기간)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파주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공사 (총괄) (관급자제)	계약금액 :1,377,921,284원	2,176,393,000원 (증) 798,471,716원	'97.12. ('97.12. ~2000.11)	철근, 레미콘, 흙관, 시멘트, 파일, 전기계장, 기계설비등 관급자제대 단가인상 및 수량 증가 로 증액	관급자제는 정산 및 관 급자제환가 등이 예상 되므로 추 후 변동 가 능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임 병 윤	답변부서	환경보호과	질의일시	2000.10.17
제 목	쓰레기위생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자료 제출				
[질의요지] ○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 설계, 예산등 추진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적격심의,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위탁계약서 자료 제출					
[답변내용] ○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자료 : 불 입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자료 : 불 입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계 약 일 (공사기간)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파주시 쓰레기 위생 처리시설 설치공사 (총괄)	계약금액 :26,093,904,216원	(1차변경) 28,220,634,310원 (중)2,126,730,094원	'99.11.10 ('99.2. ~ '99.11)	1. 주민편익동 스쿼시장 추가설치 2. 주민지원 사토량 증가 3. 310번 진입도로 구배조정(옹벽 포함) 4. 군부대시설 이전공사 5. 자유로 가 · 감속차선 길이 증가	
		(2차변경) 30,877,917,390원 (중)2,657,283,080원	2000. 6. 7 ('99. 11 ~ 2001.7)	1. 소각동 면적중대(연돌 포함) 2. 침출수처리동 면적중대(고도처리 추가) 3. 주민지원 사토 (내포리 상습 침수지역 사토지원) 4. 군부대 작전도로 개설(GABIAN 포함)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현황

○ 시설비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향후계획	
			소계	'96	'97	'98	'99	2000	2001	2002		
개	합 계	49,776,967	22,153,667	150,000	2,000,000	3,000,000	7,029,000	9,976,667	12,500,000	15,121,300		
	국 비	19,811,650	6,001,000			900,000	2,108,000	2,993,000	6,250,000	7,560,650		
	도 비	11,106,725	4,201,400			630,000	1,476,300	2,095,100	3,125,000	3,780,325		
	시군비	16,858,592	9,951,267	150,000		1,470,000	3,444,700	4,888,567	3,125,000	3,780,325		
	기 타	2,000,000	2,000,000		2,000,000							
소각장	소 계	43,807,967	16,183,667	150,000	2,000,000	3,000,000	3,500,000	7,536,667	12,500,000	15,121,300		
	국 비	18,021,650	4,211,000			900,000	1,050,000	2,261,000	6,250,000	7,560,650		
	도 비	9,853,025	2,947,700			630,000	735,000	1,582,700	3,125,000	3,780,325		
	시군비	13,933,292	7,027,967	150,000		1,470,000	1,715,000	3,692,967	3,125,000	3,780,325		
	기 타	2,000,000	2,000,000		2,000,000							
매립장	소 계	5,969,000	5,969,000				3,529,000	2,440,000				
	국 비	1,790,000	1,790,000				1,053,000	732,000				
	도 비	1,253,700	1,253,700				741,300	512,400				
	시군비	2,925,300	2,925,300				1,729,700	1,195,600				
	기 타											

※ 보조비율 : 기투자비분 ⇒ 국비30% 도비21% 시군비49% 향후투자비분 ⇒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파 주 시

우 : 413 - 02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우 행) 2121 일반) 0348-941-2144) ☎ 944-8075
총 무 과 과 장 이 순 용 시정담당 김 규 범 담당자 김 명 준

문서번호 총무 12110 - 221)

시행일자 2000. 4. 4 (년)

공개여부

반 음 환경보호과장
참 조

선 결	국 장	지 시	
점 일 자	2000. 4. 4	결 과	과 장
수 번 호	632	공 란	김 명 준
처 리 과		심 사 자	
담 당 자	김 진 영	심 사 일	

제 목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위탁운영관리 법인 선정통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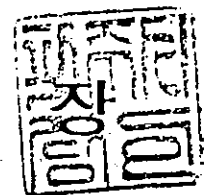
2000. 3. 24(금) 14:00에 개최된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위탁업체가 선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인수인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업체 :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자 권형기)

나. 관련부서 조치사항

1. 인수인계목록 작성
2. 시설운영 준비 지원 및 지도·점검
3.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조치등 제반사항. 끝

파 주 시



“힘들고 어려울수록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위탁운영체선정

심 의 의 결 서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체를 선정 심의 의결한다.

법 인 명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 재 지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대 표 자	권 형 기
위 탁 일 자	2000. 1. 1자

□ 심의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부 시 장	황 준 기	(서 명)	
위 원	파주시의회의원	황 의 형	(서 명)	
위 원	파주시의회의원	이 종 필	(서 명)	
위 원	총 무 국 장	이 원 재	(서 명)	
위 원	사회산업국장	최 익 수	(서 명)	
위 원	건 설 국 장	김 기 성	(불 참)	

간 사	총 무 과 장	이 순 용	(서 명)	
-----	---------	-------	-------	--

2000. 3. 24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의회

“푸른환경, 밝은사회, 살기좋은 으뜸파주”

파 주 시

우 : 413 - 02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행)2121 일반)0348-941-2144) ☎ 944-8075
총 무 과 과 장 이 순 용 시정담당 김 규 범 담당자 김 영 준

문서번호 총무 12120 ~ 750

시행일자 2000. 3. 21.(년)

(경 유)

받 은 받 는 곳 참 조

참 조

보존기간

공개여부

부 시 정

총무국장

총무과장

담 당 자

심 사 자

제 목 민간위탁 직각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 및 회의개최 통보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혐기성
퇴비화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선임하고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황의형 시의회 의원, 이종필 시의회 의원

총무국장 이원재, 사회산업국장 최익수, 건설국장 김기성

나.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000. 3. 24.(금) 14:00

· 심의장소 : 제2상황실(부시장실 옆)

· 심의대상 :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 시설 관리업무 위탁건

다. 심의방법 : 토론 후 “심의의결서에 의한 심사”. 끝

파 주 시 장

진 결 부 시 장 황 준 기

받는곳 : 파주시의회의장, 심사위원 전원

“힘들고 어려움수록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파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99. 12. 29 제40회 파주시 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에 있어,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의 위탁 적격여부를 심의
하고자함.

□ 위탁업체 :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

※ 수탁업체 선정이유 : 동시설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로서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직영 운영시 혐기성 시설에 대한 전문기술 및 인력이 없어, 혐기성
시설에 대한 전문기술 보유업체이며 동 시설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주)에
일정기간 위탁운영 및 관리시켜,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 가동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운전초기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유도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전관리를 위하여 한라산업개발(주)에 위탁 하고자함.

□ 위탁수입 : 없음

□ 위탁자 선정계획

○ 위탁근거

- 파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위탁운영 선정절차

- 적격자 심사 위원회 구성 (9인 이내)
- 적격자 심사 위원회 선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탁 운영체 지정 공고
- 위탁 협약서 작성 및 인수인계
- 위탁운영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 시설

○ 소재지 :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39-3번지 일원

○ 건립주체 : 파주시

○ 시설현황

- 시설용량 : 30톤/일

- 처리방식 : 중온 혐기성 소화법 (33℃ ~ 37℃)

- 부지면적 : 6,599㎡

- 건축연면적 : 860.48㎡ (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

(처리장 : 773.1㎡, 운영통제실 : 87.38㎡)

- 주요설비 : 반입설비, 전처리설비, 혐기성소화설비, 후처리설비,
바이오가스설비, 탈취설비

○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

-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기기운영 및 유지관리

-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건축물의 유지관리

- 시설의 운전 상태분석 및 계절변동에 따른 운전방법 정착

- 상업운전을 위한 공정분석 및 설비의 안정화

- 설비운전 지원

※ 파주시 제공사항

-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설비내 반입

- 시설운전용 용수 및 전력공급

- 운영중 발생한 퇴비반출 및 배포

○ 시직영/민간위탁과의 예상수지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시 직 영		민간 위탁시		절 감 액	
	인력	유지관리비	인력	유지관리비	인력	유지관리비
운영·유지관리	8	371,580	6	305,610	2	65,970

□ 적격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5인)

- 의회의원 2명(황의형 의원, 이종필 의원)
- 총무국장(이원재), 사회산업국장(최익수), 건설국장(김기성)

□ 심의시 고려사항

○ 회사의 사업수행 자격

- 위탁관리 자격 보유여부
- 입찰참가 제한여부
- 위탁관리용역 실적 충족여부
-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재정상태 등)

○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험, 재정상태 건실도
- 전문화 정도, 보유기술, 사업의 이해도,
- 참여기술자 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등

□ 위탁업체 현황 : 별첨 (위탁운영관리 수행능력 평가자료)

☐ 위탁기간 : 약정일로부터 3년 (2000. 1.1 ~ 2003.12.31)

※ 무상위탁운영 : 1999.11. 1 ~ 1999.12.31

☐ 위탁조건 : 위탁약정에 의함.

☐ 운영방법 : 위탁사무의 내용, 재산, 기간,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운영

☐ 운영비 지원

○ 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지원기준

- 인건비 : 인력 소요경비

- 유지관리비지원 : 위(수)탁 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청구받아 관리감독 부서에서 연간 예산의 적정여부 검토, 조정 및 결정후 해당연도에 예산편성하여 지급 단,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는 설비 보수 유지비를 청구 및 지원하지 않음.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관리 위·수탁 협약서

파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권형기(이하 “을”이라 한다)는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위·수탁 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위탁시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의 범위) ① 위탁시설의 범위는 “갑”이 “을”에게 인계한 시설과 부대시설물 및 비품을 포함한다.

② 위탁기간 중 위탁시설 내 “갑”이 신설한 시설도 “을”에게 인계하여 위탁 관리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 수탁 운영 개시일은 2000년1월1일로 한다.

② 위 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인계, 인수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한다.

③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위탁관리비) ①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갑”과“을”협의하여 연액으로 결정한다.

② 위탁관리비는 “을”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③ 위탁관리비는“을”에게 지원하다.

제6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① 내구연한 내에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수탁자의 책임하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위탁자가 교체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위탁자가 교체한다.

② 수선 유지비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 등의 개·보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수탁시설의 하자 보수기간 중에 하자 보수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수선 유지비로 “갑”이 산정한 원가계산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약이행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 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의 운영관리 관계 법령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별도로 정하는 「과주시 음식물쓰레기혐기성 퇴비화시설 민간위탁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적정관리) ① “을”은 수탁시설의 유지 및 관리 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관리 운영함에 있어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및 공휴일에도 반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단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운영관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 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탁시설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없이 신·증, 개축과 폐기, 용도변경등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수질 및 퇴비성분관리) ① “을”은 방류수 수질 및 퇴비성분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비료공정 규격 이내로 처리되도록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비료공정 규격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수질기준 및 비료공정 규격을 초과 할 경우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2조(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인계) ① “갑”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② 무상 제공할 재산 및 설비, 비품 등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인계한다.

제13조(사진보고) “을”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실적보고 및 확인) “을”은 매월 수탁업무의 처리성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매 익월15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처리 성과 보고서 “갑”에게 당월분 위탁관리비를 청구하고 “갑”은 처리성과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제16조(기밀유지) “을”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협약의 해제)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갑”이 위탁한 업무를 수탁하지 않을 때

2. 관계법령 및 “갑”이 제시한 운영관리 지시 및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을”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해 해제 될 때에는 3개월 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제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20조(협약에 정하지 않는사항) 이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협약서동의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0년 2월 일

“갑” : 파 주 시 장 송 달 용

“을” : 한라산업개발(주) 권 형 기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등 준수)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함은 물론 본 지침 및 위, 수탁협약서에 따라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대상시설의 표시) 위탁대상시설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명 :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2. 처리능력 : 30톤/일
3. 부지면적 : 6,599㎡
4. 처리방식 : 중온혐기성소화법
5. 기타 부대시설 : 처리동, 운영통제실, 계량대, 산발효/메탄발효조, 가스저장탱크, 잉여가스처리시설, 세척시설

제4조(위탁대상업무의 내용) 위탁대상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 가. 음식물쓰레기 계량 및 반입관리
 - 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 다. 퇴비 부숙처리 및 포장, 보관 관리
 - 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유지, 운전조작
 - 마. 처리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 바. 시설보호 및 각종기기 등의 정상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점검
2.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가. 난방용 보일러의 조작, 점검, 정상유지관리, 기록
 - 나. 유류탱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및 연료접수, 기록
 - 다. 시설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3.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조작, 정상유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설비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조작, 유지관리 및 점검

4. 수질 및 퇴비성분 유지관리업무

가. 검사의 실시

수질 : 주1회, 퇴비 : 분기 1회

나.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

수질 : 탈수기, 퇴비 : 부숙기

다. 시험항목

수질 : 주1회(BOD, SS), 년2회(BOD, SS, COD, T-N, T-P, 대장균)

퇴비 : 비료공정 규격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가. 처리동 실내청소,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등

나. 정기적 (년 1회이상)으로 하는 작업으로는 시설 진입도로 청소

6. 기타업무

위탁자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기계장치 등, 이 경우 비용은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 추진한다.

제5조(종업원의 임용등) ①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성실한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시설운영관리 직원으로 임용할 인원수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월보수액은 현직급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현장대리인) ①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위탁자에게 현장대리인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위, 수탁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항상 종업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7조(작업복장)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시의 조치) ① 수탁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종업원의 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은 수거량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1조(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① 수탁자는 본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실 등의 사용) ①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등은 협약기간중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상 파손, 오손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무실 등의 사용에 따른 광열비, 전기료, 인계, 인수받은 물품 외의 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며, 수탁자는 무상대여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구, 사무기기 등의 사용)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위탁자에게 불입한다.

제2장 서류 및 장부

제15조(제출서류) 수탁자는 수탁협약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위탁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업무착수계
2.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계
3. 작업상의 운영규칙
4.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제16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 (연간, 월간)
2. 운전일보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 매월 위탁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운전일보
2. 수질 및 퇴비 유지관리 월보
3. 수질검사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3장 작업요령

제17조(업무처리방법) ① 수탁자는 시설이 공공수역의 보전과 주민환경위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심하여 수질 및 퇴비성분 시험결과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운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기의 운전, 조작은 제원 및 기기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고장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정비) 수탁자는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 이상 개소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하며 그 경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1회이상 실시하되,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고 점검계획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으로 수행한후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 및 개조) ① 수탁자는 각종 점검, 정비과정에서 불량개소 또는 사고, 고장이 발생한 파손개소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그 내용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응급수리를 행한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등의 개조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수탁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경비 및 도난) 수탁자는 시설, 설비, 기기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수탁업무의 인계.인수등

제22조(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① 수탁자는 협약후 인계, 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전과정의 시험운영등을 통하여 인수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수탁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인계, 인수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제시에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 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촬영한 기록사진을 상호 보관한다.

제5장 기 타

제23조(기타) ① 위탁자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침등의 해석)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 고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 형 기 (500419-1721613)		2) 설 립 일 자		1999.4.9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남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4) 전 화 번 호 (FAX)		0693-460-4175		
	5) 사 업 내 용		1) 토목·건축 공사업 2) 산업설비공사업 3) 방지시설업						
	6)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2,000 백만원		7) 총 종 업 원 수		181 명		
	8) 기업의 유형		☐ 대 기 업 ☒ 중소기업		9) 연간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38,000 백만원		
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10) 명 칭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		11) 설립일자		1999. 4. 9		
	12) 주요활동분야		1) 설계용역 2) 시 공 3) 위탁운영 4)						
	직 원	13) 총 원	181 명	14) 고급기술인력	20 명	15) 기타기술인력	41 명		
	건 물	16) 소유형태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17) 독립여부	☐ 독립건물 ☒ 분리구역	18) 면 적	1,080.33㎡ 329.52(평)	
	19)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이상에 한함)					외 정			
참 여 자 격	20)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설계 외 3 점			
	21) 다른 법령에 의한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자 격보유현황)								
	22)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 한 기간중인지의 여부					☒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임			
	23) 사업수행 능력평기관이 제시한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 조건미비			
신청인의 최근5년간 엔지니어링사업수행 경험									
24) 총수행건수· 계약금액 (도급/하도급)					4 건, 182,020천원 (4 /)				
25) 유사사업수행건수· 계약금액 (도급/하도급)					2 건, 109,660천원 (2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26)납기이행여부, 납품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용역업체 지정여부, 상훈실적 등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27)총보유기술인력
(전담부서)

21 명

28)당해사업관련
보유기술인력

8 명

29)당해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
(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등)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 퇴비화 기술
(특허, KT 인증 보유)

30)당해사업의 전단계 용역수행실적

1 건

50 백만원

31)당해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사업의 용역수행실적

3 건

132 백만원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미정)

32)성 명

김 시 현

33)주민등록번호

580130 - 1143419

34)최종학력

대 학 원 졸

35)최 종 학 위

석 사

36)자격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환경기술사

37)취 득 일 자

1995.1.5

38)당해업체 근무지

수처리사업부

직위

부장

39)당해업체근무기간

150개월
(한라중공업 근무 143개월포함)

40)최근 5년간 총용역 수행실적

4 건

41)최근 5년간 당해사업 유사용역 수행실적

2 건

42)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 정지중이 아님
☐ 정지중임

43)발주기관이 본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 조건미비

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경험

44)성 명	양 수 민	45)주민등록번호	660824 - 1639212
46)최 종 학 력	대 졸	47)최 종 학 력	학 사
48)자격증 보유현황	수질환경기사	49)취 득 일 자	1991. 10
50)당해업체 근무처	기계설계팀	직위	과장
51)당해업체 근무기간	96개월 (한라중공업 89개월포함)		
52)최근년간 총용역수행실적		3 건	
53)최근5년간 당해사업 유사용역실적		2 건	
54)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 정지중이 아님 ☐ 정지중임	55)발주기관이 불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 조건미비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56)사업의 명칭	57)계약기간	58)계약금액	59)참여기간	60)참여직위	61)발주처
파주시 음식쓰레기 혐기성퇴비화 설비	1998.6~ 1999. 10	1,635 백만원	20개월	부 장	파 주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56)사업의 명칭	57)계약기간	58)계약금액	59)참여기간	60)참여직위	61)발주처
파주시 음식쓰레기 혐기성퇴비화 설비	1998.6~ 1999. 10	1,635 백만원	26개월	사 원	파 주 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구분 근무기간	68)기술사	기술자				73)계
		69)특급	70)고급	71)중급	72)초급	
3년미만	1		2	3	2	8
3년이상						
계	1		2	3	2	8

74)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월수

- 원